

2022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안

검 토 보 고

I. 예산개요

1. 세입예산

○ 해당 사항 없음.

2. 세출예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22년 세출예산은 4억 4천 6백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4억 7천 1백만 원 대비 5.3% 감액된 수준이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4억 5천 7백만 원 대비 2.4%가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471,288	457,388	446,367	△24,921	△11,021	△5.3%	△2.4%
행정관리	소 계	471,288	457,388	△24,921	△11,021	△5.3%	△2.4%
	행정운영경비	131,992	131,992	△2,294	△2,294	△1.8%	△1.8%
	재무활동	-	-	-	-	-	-
	사업비	339,296	325,396	316,669	△22,627	△8,727	△6.7%
교 부 금	-	-	-	-	-	-	-

○ 2022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0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1 예산		2022예산	20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471,288	457,388	446,367	△24,921	△11,021	△5.3%	△2.4%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339,296	325,396	316,669	△22,627	△8,727	△6.7%	△2.7%
고충민원의 적극적 해소	28,220	28,220	21,260	△6,960	△6,960	△24.7%	△24.7%
고충민원 조사 처리	28,220	28,220	21,260	△6,960	△6,960	△24.7%	△24.7%
시민참여 활성화	180,423	180,423	212,732	32,309	32,309	17.9%	17.9%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35,500	35,500	37,300	1,800	1,800	5.1%	5.1%
공공사업 감시평가	108,800	108,800	102,600	△6,200	△6,200	△5.7%	△5.7%
시민참여 활성화 및 공공사업감시 효율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36,123	36,123	27,832	△8,291	△8,291	△23.0%	△23.0%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	-	45,000	-	45,000	-	100%
위원회 직무역량 및 위상 강화	130,653	116,753	82,677	△47,976	△34,046	△36.7%	△29.2%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111,733	111,733	70,977	△40,756	△40,756	△36.5%	△36.5%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 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18,920	5,020	11,700	△7,220	6,680	△38.2%	133.1%
행정운영경비	131,992	131,992	129,698	△2,294	△2,294	△1.7%	△1.7%
기본경비	131,992	131,992	129,698	△2,294	△2,294	△1.7%	△1.7%
기본경비	131,992	131,992	129,698	△2,294	△2,294	△1.7%	△1.7%

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 해당 사항 없음.

2. 세출예산 검토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4억 7천 1백만원) 대비 5.3%(2천 5백만원) 감액된 4억 4천 6백만원 수준임.

※ 2021년도 최종예산(4억 5천 7백만원) 대비 2.4%(1천 1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전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액 사업은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4천 5만원, 순증), 등 2개 사업이고, 주요 감액 사업은 “고충민원 조사 처리”(△7백만원, △24.7%), “시민참여 활성화 및 공공사업감시 효율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8백만원, △23.0%),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4천 1백만원, △36.5%),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7백만원, △38.2%) 등 7개 사업 중 5개 사업에서 감액편성(평균 △20.5%) 되었음.

가. 고충민원 조사 처리

- “고충민원 조사 처리” 사업은 고충민원 직접조사 및 민원배심제 운영을 통해 시민의 권리구제 및 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당초예산(2천 8백만원) 대비 24.7%(7백만원) 감액된 2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1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민원배심제 횟수 감소(8→4회) 및 각종 수당 감액

※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교육 강사료, 교재비 감액

□ “고충민원 조사 처리”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28,220	(x-) 28,220	(x-) 21,260	(x-) △6,960	(x-) △25
사무관리비	(x-) 14,820	(x-) 14,820	(x-) 7,860	(x-) △6,960	(x-) △4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13,400	(x-) 13,400	(x-) 13,400	(x-) 0	(x-) 0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1,920천원	○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960천원
	- 강사료 360,000원*2명*1회 = 720천원	- 강사료 360,000원*1명*1회 = 360천원
	- 교재비 6,000원*200부 = 1,200천원	- 교재비 6,000원*100부 = 600천원
	○ 민원배심제 운영 = 12,900천원	○ 민원배심제 운영 = 6,9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200,000원*4명*8회 = 6,400천원	- 배심원 등 회의참석 수당 200,000원*4명*4회 = 3,200천원
	- 자료검토 수당 100,000원*4명*8회 = 3,200천원	- 배심원 등 자료검토 수당 100,000원*4명*4회 = 1,600천원
	- 주배심 수당 100,000원*1명*8회 = 800천원	- 주배심 수당 100,000원*1명*4회 = 400천원
	- 그림자 배심원 수당 200,000원*4명*3회 = 2,400천원	- 그림자 배심원 수당 200,000원*4명*2회 = 1,600천원
	- 소모품 구입비 100,000원*1회 = 100천원	- 현수막 등 소모품 구입비 100,000원*1회 = 100천원
	증감사유	
-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교재비 감액(1,920천원→960천원) - 민원배심제 운영 각종 수당 감액(12,900천원→6,900천원) · 최근 민원배심제 개최 실적('19년 6회, '20년 4회, '21년 1회)을 고려한 개최 횟수 조정(8회→4회)으로 민원배심 관련 수당 감액 · 코로나19 등 감안한 그림자배심 운영 횟수 조정(3회→2회)에 따른 수당 감액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고충민원 조사활동 업무추진 7,400,000원 = 7,400천원	○ 고충민원 조사활동 업무추진 7,400,000원 = 7,400천원
	○ 민원배심제 운영 6,000,000원 = 6,000천원	○ 민원배심제 운영 6,000,000원 = 6,000천원

○ 본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교육’과 ‘민원배심제 운영’을 위한 실제 사업비로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2천 3백만원 → 2020년 1천 3백만원(△42.9%) → 2021년 1천 5백만원(12.3%증) → 2022년 7백 9십만원(△47.0%)

- 이는 고충민원 담당자의 전문성 및 역량의 저하 우려와 함께, 별도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의 상징적 제도인 ‘민원배심제’의 기능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 민원배심제 개최 실적(2019년 6회, 2020년 4회, 2021년 1회)

- 현행 민원배심제 운영 사항을 보면, 고충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개최하고,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하며, 관련 기관은 해당 결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민원배심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배심제"란 고충민원(「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심리배심 및 결정배심을 거쳐 제9조제5항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9조(민원배심의 운영 및 결정)

⑤ 배심원단은 결정배심에서 상정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계 기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이하 "민원배심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1조(민원배심결정의 효력 등) ① 민원배심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민원배심결정을 통보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결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원배심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관련기관·부서의 업무담당자는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배심결정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배제하지 않는다.

- 민원배심제에 따른 결정에 관계 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 때문에 고충민원인이 배심제 개최에 대한 동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제도가 퇴보하는 주요 원인이라 할 것으로, 민원배심제 결정에 따른 구속력을 부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한편, 주된 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는 앞서 본대로 47.0%가 감액 편성되어 7백 9십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본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1,34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운영 행태라 할 것으로, 주된 사업비의 감소만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한 감액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금년 본 사업 예산(2천 8백만원)은 44.0%(12백만원) 불용이 전망되고 있으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천 3백만원 중 63만원(4.7%) 불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나.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 본 사업은 감사·조사 활동에 외부전문가, 시민 등의 참여를 통하여 감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청구심의회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1%(1천 8백만원) 증액된 3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1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35,500	(x-) 35,500	(x-) 37,300	(x-) 1,800	(x-) 5
사무관리비	(x-) 19,500	(x-) 19,500	(x-) 21,300	(x-) 1,800	(x-) 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16,000	(x-) 16,000	(x-) 16,000	(x-) 0	(x-) 0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10,500천원 - 회의참석수당 200,000원*7명*5회 = 7,000천원 - 자료검토수당 100,000원*7명*5회 = 3,500천원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10,5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200,000원*7명*5회 = 7,000천원 - 자료검토 수당 100,000원*7명*5회 = 3,500천원
	○ 감사·조사 등 외부 전문가 참여수당 300,000원*3명*10회 = 9,000천원	○ 감사·조사 등 외부 전문가 참여수당 300,000원*3명*12회 = 10,800천원
	증감사유	
	-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 집중홍보기간 운영('21년 7~8월)으로 감사청구 건수 증가가 예상되며, 모든 감사에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에 따른 수당지급 횟수 증가 (10회→12회) 예상분 반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민·주민감사 업무추진 16,000,000원 = 16,000천원	○ 시민·주민감사 업무추진 16,000,000원 = 16,000천원

○ 감사청구심의회는 주민감사청구 시 청구 요건 심사 및 청구인 명부의 유효서명의 확인 등을 수행하는 법정¹⁾ 위원회로, 12명(외부 10, 내부 2, 임기 2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 전년도 13명(외부 10, 내부 3)의 위원으로 구성,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감사청구심의회) 참조

□ 사업내용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구성인원 : 12명(외부 10명, 내부 3명), 임기 2년(1회 연장 가능)

- 기능

- 주민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
-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에 적힌 유효서명 확인
-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등

※ 2022년도 예산사업설명서 18페이지

- 최근 3년간 주민감사와 시민감사 운영 실적을 보면, 매년 운영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2021년 9월말 현재 개최실적은 5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3년간 주민·시민감사 실적 〉

(단위 :건)

연도별	합계	감사완료				진행중			각하 등	비고 (다음연도 이월)
		소계	주민감사	시민감사	직권감사	소계	감사	청구절차		
2021.9.	15	6	3	2	1	8	3	5	1	
2020	16	9	4	2	3				1	6
2019	23	15	2	8	5				4	4

※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23쪽

- 집행잔액 발생 현황 또한 2019년 30.8%(988만원), 2020년 46.2%(1,920만원)에 이어 2021년 10월말 현재 37.7%(1,363만원)의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는바, 전년 대비 5.1%(1천 8백만원)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본 사업은 위원회 조례 목적에서 보듯이 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고유사무로써 주민·시민감사제도의 적극적 홍보를 통한 시민의 고충 해소에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1년 예산 집행 현황 〉 (기준: 2021.10월 말 현재,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1 회계연도			
		예산액	지출액 (10월말까지)	집행잔액 (10월말까지)	집행률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소계	35,500	21,872	13,628	63.3%
	201-01 사무관리비	19,500	12,830	6,670	4,500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0	9,042	6,958	6,046

〈 최근3년간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내역 〉 (단위: 건)

연도별	회차	회의일	회의안건	처리 결과	불채택 사유
2021	1	1.19.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위탁사업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수리	-
			○영등포구 건축위원회 의결과정의 적절성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수리	-
	2	3.19.	○성북구 장위13-4구역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처리 등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수리	-
2020	1	2.13.	○은평구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수리	-
	2	4. 9.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위탁단체 선정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수리	-
	3	10.14.	○관악구 관악마을자치센터 운영 위탁 업체 선정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수리	
○관악구 관악마을자치센터 운영 위탁 업체 선정 관련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일부 이유 있음	- 5건중 3건 이유 있음, 2건 이유 없음 (대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2019	1	1. 30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지방채정 사용의 위법 및 예산낭비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수리	-
	2	8. 19	○도로점용허가 사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발언 관련 주민감사	각하	자치단체장의 발언은 지방자치법상의 주민감사 청구요건중 하나인 '사무의 처리'라 볼 수 없음
	3	11.2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감독 관련 주민감사	수리	-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2019년 3회, 2020년 3회, 2021년 2회(예산 사업설명서)

- 한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개정 사항 중 주민감사청구 연령 조건 등을 완화(19세 이상→18세 이상)하는 등 제도 활성화 기반도 개선되었는바, 적기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시행에 차질 없는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다. 공공사업 감시평가

- 본 사업은 전년(1억 9백만원) 대비 5.7%(6백만원) 감액된 1억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1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08,800	(x-) 108,800	(x-) 102,600	(x-) △6,200	(x-) △6
사무관리비	(x-) 96,800	(x-) 96,800	(x-) 90,600	(x-) △6,200	(x-) △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12,000	(x-) 12,000	(x-) 12,000	(x-) 0	(x-) 0

- 편성 예산액 산출기초를 보면, 예산액(1억 3백만원)의 87.3%(9천만원)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참석수당, 11.7%(1천 2백만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며, 1.0%(1백만원) 소모품비로 구성되어 있음.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 200,000원*35명*10회 = 70,000천원 ○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간담회 150,000원*35명*4회 = 21,000천원	○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 200,000원*35명*10회 = 70,000천원 ○ 시민참여 옴부즈만 운영 = 20,600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 2,000,000원*2회 = 4,000천원 ○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례집 제작 18,000원*100부 = 1,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 및 워크숍 참석수당 200,000원*35명*4회*70% = 19,600천원 - 현수막, 교재비 등 소모품 구입비 250,000원*4회 = 1,000천원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간담회와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을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으로 합하고, 간담회·워크숍 참석수당 및 소모품 구입비로 구분 - 간담회 및 워크숍 참석수당 단가를 증액(150천원 → 200천원)하되, 실제 참석인원을 고려하여 70% 수준으로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수당 지급기준(기본료 15만원, 2시간 초과시 5만원 추가 지급)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시민참여옴부즈만 평균 참석률: '20년 67.3%, '21년 9월 기준 71.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업무추진 12,000,000원 = 12,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업무추진 12,000,000원 = 12,000천원

-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하여 시민감사·시민참여옴부즈만이 입회활동 등을 통해 청렴계약 이행 여부 및 부조리사항 등을 감시·평가하는 사업으로,

<p><input type="checkbox"/>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감사옴부즈만 7명 - 시민참여옴부즈만 35명 구성(위촉직) · 전문분야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6개 분야 전문가로 시민참여옴부즈만 구성 · 6개분야 :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생활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 등 ○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사무위탁기관(위탁사무) 및 보조금 수령기관 ○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공사 - 5억원 이상의 용역 및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 그밖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

○ 활동내용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활동 및 부조리 사항 발견 시 직권 감사 추진
- 시정참여를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 자문역할
-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역량강화 워크숍 및 간담회 추진(연4회)

○ 본 사업과 관련 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9월말 현재 중점감시 활동은 목표 122건에 실적은 61건(50.4%)으로 나타나고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예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매년 연말에 몰아서 활동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금년들어 중점감시 및 현장감시 활동 이후 직권감사로 전환하여 조치한 실적은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음.

〈중점감시 대상사업 계획목표 달성 비율〉 (단위: 사업 수)

년도	활동실적 및 달성비율			부진사유 및 대책
	목표	실적	달성비율	
2021년 9.30.기준	122	61	50%	4/4분기 중 목표달성 예정
2020년	121	121	100%	
2019년	122	112	91.8%	하반기 신규 옴부즈만 위촉으로 감시·평가활동 부족

※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614쪽

〈최근 3년간 중점감시 활동 및 조치실적〉 (단위: 사업 개, 조치 건)

년도	목표	중점감시 활동실적						조치실적				직권 감사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계	권고	의견 표명	현지 시정	
2021년 9.30.기준	122	61	14	13	6	22	6	90	49	16	25	-
2020년	121	121	30	25	12	27	27	104	52	20	32	1
2019년	122	112	21	26	9	30	26	124	55	34	34	1
계	365	294	65	64	27	79	59	318	156	70	91	2

※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613쪽

〈참관감시 활동 계획목표 달성 비율〉 (단위: 참관회의 수)

년도	활동실적 및 달성비율			부진사유
	목표	실적	달성비율	
2021년 9.30.기준	310	173	50%	코로나19 확산으로인한 비대면회의 진행 등으로 인한 참관감시활동 요청 감소
2020년	280	305	109%	
2019년	250	366	146%	

※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614쪽

〈최근 3년간 참관감시 활동 및 추진실적〉

(단위:사업 개, 조치 건)

년도	목표	입회감시 활동 실적(사업)						조치실적				직권 감사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계	권고	의견 표명	현지 시정	
2021년 9.30.기준	310	173	12	114	24	22	1	13	-	9	4	-
2020년	280	305	13	168	75	46	3	34	-	-	34	-
2019년	250	366	6	218	65	75	2	73	-	-	73	-
계	840	844	31	500	164	143	6	47	-	9	111	-

※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613쪽

- 그럼에도 시민참여옴부즈만 간담회 및 워크숍 참석수당 편성 내역을 보면, 관련 횟수를 2회(2회→4회) 늘리고 참석수당 단가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전년 4백만원에서 1천 9백만원으로 증액(1,9604만원, 390.0%) 편성하여 본 사업 예산의 87.3%(8,960만원)를 차지하고 있고,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하여 11.7%를 차지하여 참석수당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본 사업예산의 99.0%를 차지하고 있는바,

※ 금년 본 사업 예산(1억 9백만원)은 14.8%(1천 6백만원) 불용이 전망되고 있으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천 2백만원 중 63만원(6.1%) 불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현장감시와 감시활동에 있어서 사업목적이 시민참여옴부즈만에게 수당 또는 워크숍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는바, 연말 몰아치기식 활동 방지를 위한 계획수립과 보다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한 면밀한 제도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라.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 중인 ‘주민참여형 자치입법통합플랫폼’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를 가능하게 하려는 사업으로,
 - 이에 대한 서울시 분담금 납부를 목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4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사업근거: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4677호, '21. 8. 9.)

※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총 사업비 731백만원을 국비(383백만 원) 및 지방비 (348백만원)로 분담(지방비 중 서울시는 45백만원)

· '23년 이후 유지보수비(지방비)는 주민자치통합포털 유지보수에 포함 예정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45,000	(x-) 45,000	(x-) 100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x-) 0	(x-) 0	(x-) 45,000	(x-) 45,000	(x-) 100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공기관등에대한자본 적위탁사업비		○ 온라인 주민 감사 청구 시스템 구축 45,000,000원*1회 = 45,000천원
		증감사유
	- 행정안전부에서 구축 중인 주민자치 통합포털인 자치입법플랫폼 내에서 주민 감사 청구시스템이 구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 분담금 납부(사업근거: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4677호, '21. 8. 9.)	

- 다만, 위원회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사업*에서는 시민 감사 온라인 전자서명 등 시민감사 청구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참여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2020.10.)하여 활용 중에 있는바,
 - 청구 인원 요건 등에 차이가 있을 뿐, 시민감사청구와 운영 방법에 있어서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는 본 사업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분담금과 향후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를 부담하기 보다는 현재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2년 1월 ~ 12월 ※ 시범운영: '23년 1월 ~ 6월
- 주요내용
 - 주민 직접 참여 플랫폼 및 시도 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한 온라인 주민 감사 청구 시스템 구축
 - 시스템 도입에 따른 개선사항
 - 온라인 청구 가능 (기존 감사청구 등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온라인(모바일 포함) 서명도 가능 (기존 수기 서명만 가능)
 - 서명 현황 등 진행정보 확인 가능 (기존 진행 경과 조회 불가능)
 - 주민등록시스템 연계로 자동검증 및 중복서명 검사 (기존 청구인 대표, 청구인명부 검증 시 기초지자체 공무원 동원)
 - 플랫폼을 통한 주민감사 청구 내용 확인 및 사례 전파 용이 (기존 타 기관 주민감사 청구 내용 확인 불가)
 - 플랫폼을 통한 현황 통계 자동 관리 (기존 수동 관리)
- 사업예산: 45,000천 원(서울시 분담액)
 -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총 사업비 731백만원을 국비(383백만 원) 및 지방비(348백만 원)로 분담하여 추진
 - 지방비 중 서울시는 45백만 원 분담
 - '23년 이후 유지보수비(지방비)는 주민자치통합포털 유지보수에 포함 예정

다.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 본 사업은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2020.5. 정회원)을 통해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세계 옴부즈만과 교류 활동을 통한 시민권익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 전년(1천 9백만원) 대비 38.2%(7백만원) 감액된 1천 1백 7십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0년도 최종예산(5백만원) 대비 133.1%(7백만원) 증액된 규모임.

세계옴부즈만협회 개요

- **설립시기** : 비영리 국제조직으로 1978년 창설
- **설립목적** : 옴부즈만 개념의 확산 및 세계적 발전 도모 및 전 세계옴부즈만들간 정보·경험 교환
- **사무국** :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 소재
- **참여현황** : 전세계 118개국 215개 기관, 우리나라 5개 기관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8,920	(x-) 5,020	(x-) 11,700	(x-) 6,680	(x-) 133
사무관리비	(x-) 4,000	(x-) 2,500	(x-) 1,000	(x-) △1,500	(x-) △60
행사운영비	(x-) 1,920	(x-) 1,920	(x-) 0	(x-) △1,920	(x-) △100
국외업무여비	(x-) 10,000	(x-) 0	(x-) 10,000	(x-) 10,000	(x-) 100
국제부담금	(x-) 3,000	(x-) 600	(x-) 700	(x-) 100	(x-) 17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제12차 IOI총회·국제컨퍼런스 통역비 500,000원*1명*5일 = 2,500천원	○ IOI 연례보고서 및 뉴스레터 게재 번역비 1,000,000원*1식 = 1,000천원
	○ IOI연례보고서·뉴스레터 게재 번역비 500,000원*3회 = 1,500천원	
	증감사유	
	- '22년 IOI 총회 미개최에 따른 통역비 미편성 - IOI 연례보고서 및 뉴스레터 게재 번역비 횟수 조정(3회→2회)	
행사운영비	○ 국내 IOI회원기관 세미나 개최 = 1,920천원	
	- 발표비 360,000원*2명 = 720천원	
	- 자료집 제작비 20,000원*50권 = 1,000천원	
	- 현수막 및 소모품 구입비 200,000원*1회 = 200천원	
증감사유		
	- '22년 행사 미개최로 인한 세미나 관련 비용 미편성	
국외업무여비	○ 제12차 IOI 총회 국제컨퍼런스 참석 5,000,000원*2명 = 10,000천원	○ 해외 옴부즈만(협회) 운영사례 교류 및 견학 5,000,000원*2명 = 10,000천원
	증감사유	
	- '22년도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정회원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교류견학 추진 - 국제 네트워크 조직인 IOI국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하고 세계 우수 옴부즈만과 교류 활동을 통해 시민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편성	
국제부담금	○ IOI 연회비("20.7.1.~'21.6.30.) 600,000원*1회 = 600천원	○ IOI 연회비('21.7.1.~'22.6.30.) 700,000원*1회 = 700천원
	○ 제12차 IOI총회·국제컨퍼런스 참가비 2,400,000원*1회 = 2,400천원	
	증감사유	
	- IOI 연회비 납부를 위한 예산 편성 : 375유로(≒512,520원) ※ 최근 2년간 평균 환율변동, 외국은행 수수료 등 고려 - IOI 총회 국제컨퍼런스(4년 마다 개최) 미개최로 참가비 미편성	

○ 동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는 1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현재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상황이긴 하지만,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전 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변이바이러스 재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하고 있고,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

※ 외교부는 지난 11월 13일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당초 10월 13일까지 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3일까지 연장하였음. 이는 변이바이러스 재유행에 따른 코로나 확산 상황 및 방역당국의 의견을 감안한 것이라고 함. 또한, 외교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및 백신접종률,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각 국별 여행정보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임.²⁾

- 특별여행주의보는 외교부 훈령 「여행정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 여행정보 2단계(여행자체)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함.
- 또한, 지난 2년 동안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감액하였는바,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감액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이므로, ‘국외업무여비’는 해외방문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국외업무여비’ 예산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9년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국외업무여비)	해외 옴부즈만 운영사례 교류·견학	15,000	9,989	5,011	33.4%
2020년	위원회 직무	해외 옴부즈만	15,000	0	10,000	100.0%

2) 외교부 보도자료,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2021년 11월 13일자 참조.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국외업무여비)	운영사례 교류·견학	(20년 제1회 추경 5백만원 감액)			
2021년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국외업무여비)	제12차 IOI 총회 국제컨퍼런스 참석	10,000 (21년 제1회 추경 전액감액)	0	0	0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